

대구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단1101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정인식

변론 종결2021. 3. 12.

판결 선고2021.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2016. 3.경 A과 신용보증원금 6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의 1),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갑 제1호증의 2).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6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A은 2019. 12. 15.경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20. 3. 24.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7,457,7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갑 제3호증). 위 대위변제 결과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합계액은 58,017,755원(= 대위변제금 57,457,735원 + 대지급금 512,490원 + 위약금 47,530원)이다.

다.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1) A은 2019. 10.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6,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9. 11. 1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A에 대한 파산선고와 원고의 소송수계

1)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3.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A은 2020. 7. 20. 10:00 파산선고를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0하단11578호,)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인 대상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회생법 391조 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2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391조 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¹⁾,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채무자의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A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재산이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을나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2, 을나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종전 당사자 A에 대한 본인심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피고의 남편이었던 F의 자형으로서 피고와 친인척 사이였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인 226,000,000원보다 30,000,000원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체결된 점, ③ 피고는 A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는 A에게 계약금 20,000,000원 및 잔금 3,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나 6호증의 1, 5)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서 오히려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인 165,000,000원이 변제되어 2019. 11.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3. 10.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20. 9. 29.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1. 3.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63,000,000원(= 228,000,000원 -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광남

별지

1) 2021. 3. 12.자 제5회 변론조서 참조